

정법에서 나오는 청소년, 미성년자의 기준

관련법	나이(만)	내용
「청소년보호법」	19세 ↓	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,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 규제
「공직선거법」	18세 ↑	대통령, 국회의원 선거권 有
형법	14세 ↓	형법상 책임 능력이 없음 (처벌x)
소년법	10세 ↑ 14세 ↓ (촉법소년)	→ 경찰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(지방법원) 소년부에 송치 ↳ 기소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검찰 송치 불요
	14세 ↑ 19세 ↓ (범죄소년)	→ 경찰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 → 검사는 결정전 조사를 거친 후 정식 기소(형벌) or 소년부 송치 (보호처분)
민법	18세 ↑	혼인 가능
	19세 ↑	법률행위 가능
국민참여재판	20세 ↑	국민참여재판 배심권 가능
근로기준법	15세 ↑	15세 미만자 원칙적 근로자 고용 x but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가증 → 15세 미만자 가능 미성년자 근로계약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직접 작성